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2021. 4.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문화체육관광과]

-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문화체육관광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그동안 달서구민의 문화향유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시설인 웃는얼굴아트센터와 달서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1. 6. 30.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하고, 예술향기 가득하고 생활문화가 만개하는 명품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3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달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4년 첨단문화회관으로 출범한 웃는얼굴아트센터는 2013년 조례 개정으로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6년에는 조례개정을 통해 달서생활문화센터의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우리구와 (재)달서문화재단 간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 현재까지 위탁 운영되어 왔으며 그 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 3월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자문위원회(복지·문화·보건 분야) 자문(2021. 3. 22~26.)을 통해 웃는얼굴아트센터와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운영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 결정된 보조금 및 위탁금으로 운영되며 운영인력은 웃는얼굴아트센터는 관장 1명 포함 16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달서생활문화센터는 센터장 1명(겸직) 포함 직원 3명으로 인력구성 예정입니다.
- 각 시설의 명칭은 「웃는얼굴아트센터」, 「달서생활문화센터」이며 달서생활문화센터는 장기점, 송현점 2개소로 운영중입니다. 장소는 웃는얼굴아트센터와 달서생활문화센터 장기점은 문화회관길 160에 위치하고 있고, 달서생활문화센터 송현점은 앞산순환로 24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 예술 활동지원, 문화예술 행사 개발 및 개최, 생활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문화시설 대관 등입니다.

향후계획과 운영주체 선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센터별 운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5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재)달서문화재단에 민간위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021년 5월 적격심사를 위한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중 적격여부를 심사 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위탁사무는 조례에 명시한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조례에 따라 5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번 호	안 00821048
-------------	-------------------

제출일자: 2021. 4. 8.

제출자: 달서구청장
(문화체육관광과장)

1. 제안이유

- 가. 그동안 달서구민의 문화향유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시설인 웃는얼굴아트센터와 달서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1. 6. 30.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 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하고, 예술향기 가득하고 생활문화가 만개하는 명품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3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웃는얼굴아트센터와 달서생활문화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기 위하여 달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및 주요시설
웃는얼굴아트센터	문화회관길 160 (장기동)	· 시설규모: 지상 3층, 연면적 8,595m ² · 주요시설: 공연장, 전시실, 문화강좌실, 도서실, 수영장 등
달서생활문화센터 (장기점)	문화회관길 160 (장기동, 웃는얼굴아트센터 내)	· 시설규모: 지상 1층, 연면적 635m ² · 주요시설: 동아리방, 북카페, 작은전시장 등
달서생활문화센터 (송현점)	앞산순환로 248 (송현동)	· 시설규모: 지상 1층, 연면적 366m ² · 주요시설: 동아리방, 다목적홀, 공작소 등

나. 위탁개요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수탁자 선정방법: (재)달서문화재단과의 수의계약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수의계약

- 위탁금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 결정된 보조금(위탁금)

【2021년도 예산(본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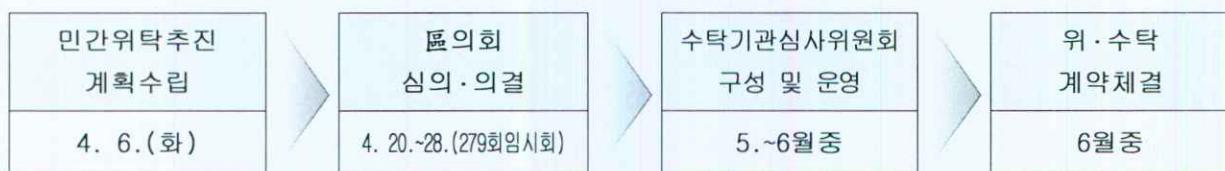
(단위: 천원)

구 분	웃는얼굴아트센터	달서생활문화센터
계	2,632,009	80,964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8-11)	2,486,053	80,964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3-02)	145,956	-

○ 위탁사무

- 시설 내·외의 건물, 부지, 부속시설물, 장비 및 물품 일체
- 시설 내·외의 건물, 부지, 부속시설물, 장비 및 물품의 유지관리
- 시설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이용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 구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지원 및 운영 등 기타 위탁자가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 추진절차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1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7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3조

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

- 정책자문위원회(복지·문화·보건 분야) 자문 결과
 - 문화영역은 다양성과 창의성 및 독특성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영역임
 - 민관 협력에 기반한 거버넌스의 가치가 현대행정의 중요요소가 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한 다양한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기회 필요
 - 센터의 위탁운영을 전제로 지역의 문화공공재로서 투명한 운영과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또한 필요
 - 민간위탁은 전문인력의 구성과 채용에 있어 훨씬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자율성의 확대로 공연의 스펙트럼이 넓어짐
 - 또한, 시설관리와 활용의 경쟁촉진을 통한 운영과 효율을 기할 수 있음
 - 민간위탁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에 대비한 중장기적 플랜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실험적 운영이 필요함

3.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 2021. 5.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운영 : 2021. 6.
- 위·수탁 계약체결 및 공증 : 2021. 6. 25.(금) 예정
- 위·수탁 개시 : 2021. 6. 30.(수)

【 관 련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 성질 ·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업무지침)

- ✓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으로 하려는 경우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되, 평가심사에 필요한 세부항목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대구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 12. 29)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2.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
3.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4. 구립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지원
5.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6. 여성의 문화 활동, 능력개발, 취업지원 등
7.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시설운영·관리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4. 기타 연간 위탁금액이 3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구의회에 보고한 경우
-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4조의3(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3조(운영 등)

- ①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는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하 “위탁 조례”라 한다)」에 따라 시설 관리 · 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위탁 운영의 경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정책자문위원회(복지문화보건 분야) 자문결과

○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효율적인 운영방안

자문위원	자문의견
김진홍 분과위원장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달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시설인 웃는얼굴아트센터와 달서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향유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문화진흥의 전초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음. 이에 두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역량과 문화시설 운영경험 및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지난 5년간 두 센터가 민간 위탁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위탁운영 기간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건강하게 잘 운영되어 왔음.민·관 협력에 기반한 거버넌스의 가치가 현대 행정의 중요요소가 되고 있음. 따라서, 민간위탁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특히, 문화영역은 다양성과 창의성 및 독특성을 요구하는 지극히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센터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많은 제약과 한계가 따른다고 판단됨.나아가, 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한 전제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공공재로서 투명한 운영과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 하여야 할 것임.
김정열 위원(문화예술) (계명문화대학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민간위탁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되며. 전문인력의 구성과 채용에 있어서 지금보다 훨씬 유연하게 확 보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을거라 생각됨.사용공간과 공연진행 측면에서 제한적이기보다는 자율성이 보다 확대되어 더 다양한 공연이 세워질거라고 봄.민간위탁의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시설관리와 활용의 경쟁촉진을 통해 운영과 효율성 그리고, 구민들을 위한 고품격 서비스 제공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음.웃는얼굴아트센터의 경우 예전에 비해 공연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 졌고, 젊어졌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문위원	자문의견
성지혜 위원(여성)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장)	<p>웃는얼굴아트센터와 달서생활문화센터는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됨. 그럼에도 몇 가지 의견을 드리면 다음과 같음.</p> <p>① 민간위탁 운영 성과를 극대화하려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수탁기관간 목표의식 공유 및 구체화, 원활한 업무협의 - 수탁기관의 자율성 확보 → 현장상황 반영, 신속한 대응 <p>② 코로나위기와 장기화에 따른 구민욕구 파악 및 문화예술환경 변화 대응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충: 실내 공간활동 어려움. 대규모행사 어려움, 특히 저연령·고연령 온라인 기반행사 익숙하지 않음. 1년간 행사중단으로 정보습득기회 줄어들고 잊혀짐. 감염위험으로 행사참여자 줄어듦. → 개별 단위 움직임, 집안에서 활동, 인터넷·스마트폰 활용 증가, 교류 줄어들고 건강 악화 등 - 동별, 성별, 연령별 구민 욕구조사 실시, 기존 욕구조사와 비교분석 후 프로그램 제안가능, 신규프로그램 추진 근거 마련→ 요구조사파악 및 시설홍보 효과 가능 - 일상적인 접근이 가능한 시설, 가족단위 나들이 가능한 시설, 달서구 대표행사를 추진 가능한 시설 등을 구분하여, 각 시설만의 차별화된·특징적인·대표적인 프로그램을 1~2개 설정 필요. - 계층별 문화욕구가 다를 것으로 생각함. 유명인,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고 구민들의 문화인식과 수준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다수 일반인의 문화적 욕구해소는 일반인의 눈높이에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봄. 달서구민의 작품, 과거·현재의 생활일상사 등 이들의 문화를 문화예술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 있다고 봄. 달서구민이 다양한 눈높이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웃는얼굴아트센터로 유입(시설, 홈페이지 등)시킬 수 있는 친근한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기존 이용객(시설이용, 프로그램이용, 행사참여 등)의 활용양상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필요 <p>③ 뉴노멀에 대비한 중장기적 플랜 마련 및 실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필요 - 대면·비대면 투트랙 프로그램 운영방안 수립 → 비대면 영상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확보 필요함 - 타 시설과 차별성, 특화된 프로그램 선택·집중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활용 방안 - 문화접근성이 낮은 계층·연령의 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유기회 확대방안 - 달서구여성친화도시·아동친화도시 정책과 연계한 시너지효과 창출방안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
- 관련조문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3조(운영 등)
 -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 비용추계 전제

- 민간위탁 동의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위탁기간인 2021. 6. 30.부터 2026. 6. 29. 까지 5년으로 함.

○ 비용추계 전제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합계
계	1,356,487	2,794,361	2,878,192	2,964,538	3,053,474	1,572,538	14,619,590
웃는얼굴아트센터	1,316,005	2,710,969	2,792,298	2,876,067	2,962,349	1,525,609	14,183,297
달서생활문화센터	40,482	83,392	85,894	88,471	91,125	46,929	436,293

○ 재원조달방안

-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비: 구비 100%
- 달서생활문화센터 운영비: 구비 100%

3. 작성자: 복지문화국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상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6차년도 (2026)	계
세 입		64,500	132,870	136,856	180,000	185,400	95,481	795,107
세 출		1,356,487	2,794,361	2,878,192	2,964,538	3,053,474	1,572,538	14,619,590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1,316,005	2,710,969	2,792,298	2,876,067	2,962,349	1,525,609	14,183,297
달서생활문화센터 운영		40,482	83,392	85,894	88,471	91,125	46,929	436,293
재원조달		1,356,487	2,794,361	2,878,192	2,964,538	3,053,474	1,572,538	14,619,590
자체 수입	소 계	1,356,487	2,794,361	2,878,192	2,964,538	3,053,474	1,572,538	14,619,590
	지방세수입	1,356,487	2,794,361	2,878,192	2,964,538	3,053,474	1,572,538	14,619,59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
	국고보조금	-	-	-	-	-	-	-
기 금		-	-	-	-	-	-	-
특별회계		-	-	-	-	-	-	-
기 타		-	-	-	-	-	-	-